

1. 개정이유

수출자가 원산지소명서를 작성할 때 물품에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원재료의 품목번호는 기준 충족 여부 확인에 불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도록 서식을 개정하여 수출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터키”의 국가 명칭이 “튀르키예”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2. 27. ~ 3.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 중 “터키: 터키”를 “튀르키예: 튀르키예”로, “터키가”를 “튀르키예가”로 한다.

제4조제9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7조제2항제7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15조제9항 본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터키와의 협정”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으로,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제24조제9호 전단 중 “터키에서”를 “튀르키예에서”로, “터키와의”를 “튀르키예와의”로, “터키의”를 “튀르키예의”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터키”를 각각 “튀르키예”로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중 “터키”를 “튀르키예”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9호 관련)”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4조제9호 관련)”으로 한다.

별표 19의 제목 중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9항 관련)”을 “튀르키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제9항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산지소명서 작성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출되는 건부터 적용한다.

원 산 지 소 명 서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4쪽 중 제1쪽)

수출자·생산자						
1. 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2. 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전화/팩스번호			
	주 소 (전자우편주소)					
물 품 명 세						
3. 품명/규격				4. 품목번호(HS No.)		
5. 물품가격	가격조건	공 장 도가격(EXW) [] 본선인도가격(FOB) []	6. 원산지결정기준			
	금 액		7. 자유무역협정명칭			
8. 주요생산 공 정						
원재료명세서						
9. 연번	10. 재료명	11. 품목번호 (HS No.)	12. 원산지	13. 가 격 수 량 가 격		14. 공급자 (생산자)
15. 합 계		원산지재료				
		비원산지재료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6.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7.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18.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부가가치비율 : %)		
19. 원산지재료로만 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0. 결합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1. 특정공정기준 충족여부		예 [] 아니오 []
22.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3. 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4.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 아니오 []		25. 기 타		예 [] 아니오 []

210mm×297mm[백상지(80g/㎡)]

RCEP 원산지 국가 확인(Declaration of RCEP Country of Origin)						
26.수출 대상국 (Export Destination)	27.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RCEP Appendix of Annex I)		28.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Domestic Value Addition)	29.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국내 수행 여부 (Processed Beyond Minimal Operations)		30.RCEP 원산지 국가 (RCEP Country of Origin)
	해당(Y)	미해당(N)		수행(Y)	미수행(N)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 호 및 주 소 :
 작 성 일 : 년 월 일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1.수 출 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2.생 산 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우편주소 포함) 등을 기재합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3.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기재합니다. 예) TV : OamOOng OO-1234 ; OO TV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품목번호(HS No.)	○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5.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FOB) 또는 공장도거래가격(EXW) 중 해당하는 것에 “√” 를 기재합니다. ○ 금 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재합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나. 원산지재료로만 생산한 물품 다. 세번변경기준 - 2단위 세번변경기준 - 4단위 세번변경기준 - 6단위 세번변경기준 라.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 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등 두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동시에 충족한 경우 바. 특정공정기준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아. 기타기준 - WO - PE - CC - CTH - CTSH - BD - BU - MC - NC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CC(CTH 또는 CTSH) + SP - BD(BU, MC 또는 NC) + SP - CC(CTH 또는 CTSH) + BD(BU, MC 또는 NC) + SP - SP - OP - Other ○ 결합기준 기재 시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 부가가치비율을 함께 기재합니다. 예) - 세번변경기준과 공제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5% 이상 : CTH + BD 35% - 집적법으로 부가가치 비율이 30%이상일 것과 특정공정기준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 BU 30% + SP
7.자유무역협정명칭	○ 해당 물품에 적용할 자유무역협정 명칭을 기재합니다. 예) 적용협정이 아세안과의 협정일 경우: 한-아세안 FTA
8.주요생산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재합니다.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OO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9.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사용된 원재료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기재합니다.
10.재 료 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11.품목번호(HS No.)	○ 원재료의 품목번호(6단위)를 기재합니다. 다만, 그 물품이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2.원 산 지	○ 원재료의 원산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13.가 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14.공급자(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우편주소·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15.합 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16.~25.원산지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기재합니다. 예)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기재 ○ 제21란부터 제25란까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을 “예[√]”로 기재한 경우에는 세부 증빙자료를 별지로 첨부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항 목	작성 내용
※ 제26란부터 제30란까지는 제7란의 자유무역협정명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6. 수출 대상국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회원국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예)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물품인 경우 “VN” 또는 “베트남” 으로 기재
27. 수출 대상국의 RCEP 부속서 I 양허표 부록 지정 물품 여부	○ 수출물품이 해당 수출 대상국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부속서 I 부록에 명시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28.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 비율	○ 제27란을 “해당(Y)” 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합니다. 다만, 공제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비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비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하며, 집적법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역내산재료의 가격 대신 한국산재료의 가격을 사용합니다.
29. 최소공정 이외의 공정 수행 여부	○ 수출물품에 대한 제6란의 원산지결정기준을 “PE” 로 기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30. RCEP 원산지 국가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6조에 따라 결정된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 국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영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1. -----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u>터키</u> : 터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영공 및 국제법에 따라 생물 또는 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을 목적으로 <u>터키가</u>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갖고 있는 해양 지역	아. <u>튀르키예</u> : <u>튀르키예</u> ----- ----- ----- ----- <u>튀르키예가</u> ----- ----- ---
자. ~ 러. (생 략)	자. ~ 러. (현행과 같음)
2. ~ 16. (생 략)	2.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법 제7조제4항 및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원산지결정의 기준) -----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대한민국과 <u>터키</u> 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9. ----- <u>튀르키예</u> ----- ----- ----- -----

별표 9

10. ~ 22. (생략)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생략)

②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 터키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
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한 것

8. ~ 16. (생략)

③ ~ ⑤ (생략)

제15조(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
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⑧ (생 략)

⑨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9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10. ~ 22. (현행과 같음)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1. ~ 6. (현행과 같음)

7. 튀르키예-----

8. ~ 16.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
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튀르키예

.

튀르키예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9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 (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⑩ ~ ⑪ (생략)

제24조(체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방법) 법 제17조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 8. (생략)

9. 터키에서 수입된 물품: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터키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터키 관세당국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터키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소

[illegible]

⑩ ~ ⑪ (현행과 같음)

제24조(채약상대국별 원산지에 관
한 조사의 방법) -----

1. ~ 8. (현행과 같음)

[illegible]

속 공무원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 <u>튀르키예와의</u> ----- ----- <u>튀르키예의</u> - ----- ----- . ----- ----- <u>튀르키예</u>
10. ~ 21. (생략) 제37조(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 6. (생략) 7. <u>터키</u>의 관세당국에 요청한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요청한 날부터 10개월 8. ~ 17. (생략) ② (생략)	10. ~ 21. (현행과 같음) 제37조(채약당사국의 조사결과 회신기간) ①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u>튀르키예</u>----- ----- ----- ----- 8. ~ 1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